

산소치료 처방전

※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[] 재발급

수진자 (진료받은 사람)	건강보험증 번호		성명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전화번호 (주택) (휴대전화)
진료과목			
상 병		상병명	상병코드
산소처방 지시사항 (1일에)	안정 시	L/분	시간
	운동 시	L/분	시간
	취침 시	L/분	시간
동맥혈 가스검사 결과		[] 산소분압(PaO2)이 55mmHg 이하	
		[] 산소포화도(SaO2)가 88% 이하	
		[] 산소분압(PaO2)이 56~59mmHg	[]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55% 초과)
		[] 산소포화도(SaO2)가 89% 이상	[]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
			[] 폐동맥고혈압
산소포화도 검사결과		[] 산소포화도가 88% 이하	
		[] 산소포화도가 89% 이상	[] 적혈구 증가증(헤마토크릿 55% 초과)
			[]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
			[] 폐동맥고혈압
호흡기장애 정도		[] 심한 정도 [] 심하지 않은 정도	
		[] 2019.7.1.전 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된 자(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 가능) ※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 또는 장애등급을 의미함	
산소치료 처방기간	 ~ 까지	
처방전 사용기간		※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	

년 월 일

요양기관 명칭

(요양기관 직인)

요양기관 기호

담당의사

(서명 또는 인)

면허번호

제

호

전문과목

전문의 자격번호

유의사항

1.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.
2.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.
3.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·결핵과·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.
4.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.
5.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"재발급"에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.
6.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.
7.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, 서비스 내용,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의 정책센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.
8. 2019.7.1전 호흡기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.
9.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,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10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중에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,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11.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제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, 자동으로 처방전등록번호가 부여되며,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

1.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2.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.
3.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사가 발행하여야 합니다.
 - 제1형 당뇨병: 내과·소아청소년과·가정의학과 전문의
 - 제2형 당뇨병: 의사 (다만,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·소아청소년과·가정의학과 전문의)
 - 임신중 당뇨병: 내과·소아청소년과·가정의학과·산부인과 전문의
4. 총 처방기간은 90일 이내여야 하나,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.
5.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.
6.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지원대상자		기준금액		
		인슐린 투여자	인슐린 미투여자	
제1형 당뇨병환자		2,500원/일	해당사항 없음	
제2형 당뇨병환자	만 19세 미만	2,500원/일	1,300원/일	
	만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	1회 투여	900원/일	해당사항 없음
		2회 투여	1,800원/일	해당사항 없음
		3회이상 투여	2,500원/일	해당사항 없음
임신 중 당뇨병환자		2,500원/일	1,300원/일	

비고 : 나이는 처방일 기준

7.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,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8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중에 구입한 경우,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9.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제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, 자동으로 처방전등록번호가 부여되며,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“재발급”에 [✓]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.
-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,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 - 외국인(재외국민)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 -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(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)
-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[✓] 표시를 합니다
 -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[✓] 표시를 합니다
 -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.
-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[✓] 표시를 합니다.
- ⑤ 처방하는 품목에 [✓] 표시를 합니다.
- ⑥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.
-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.